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방안

지난해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연초 6%이상의 경제성장을 전망했던 정부는 현재 3% 경제성장을 달성을 정책목표로 잡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내수부진과 기업의 투자부진에 있다. 내수부진은 소비감소가 원인이며 소비감소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줄어 실업률이 늘어나거나 실질임금이 감소되기 때문인 바, 결국 경기침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의 생산활동 감소를 가져오는 기업의 투자부진인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촉진을 통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금융·조세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투자가 활성화되는 가시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조세상의 지원방안으로서 제일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법인세율의 인하다.

기업의 투자부진은 결국 낮은 수익률 때문인데 그 이유는 내수와 수출이 부진하거나 노사관계 불안정에도 원인이 있지만 또다른 중요한 하나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경쟁국가인 대만이나 싱가포르에 비해 높고,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계속해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현장의 4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도 46.2%의 중소기업이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으로서 법인세 인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은 매우 미온적이다. 법인세 인하의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경쟁국의 움직임, 균형재정 등을 이유로 중장기적인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수구성 측면에서 볼 때 법인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 법인세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 추이

(단위: 억원)

연도별 설비투자	2001년	2002년	2003년		계
			상반기(실적)	하반기(실적)	
투자액	43,102	48,597	25,297	20,828	46,125
전년대비	(-1.3)	(12.7)			(-5.1)

자료 : 2003년도 중소기업설비투자 전망, 기업은행, 2003. 8

주요국의 법인세율(최고세율) 비교

(단위: 억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일본	중국	독일	미국
27	25	22	16	12.5	30 (25)	30 (25)	39.5 (25)	35

주 : () 내는 향후 인하계획중인 세율, 일본·중국은 현재 논의중

주요국의 법인세비중 비교(2000년)

(단위 : 억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법인세 / 총조세	14.1	8.5	13.5	7.0	9.8

자료 : 『조세재정통계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2003. 7

을 인하는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여건에 있다.

법인세율의 인하폭은 단순히 1%~2% 수준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를 확실히 유도하기 위해 과감한 수준의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세율인하의 효과는 경제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이 세수감소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을 감안, 정부의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참고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기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법인세율 인하폭과 관련, 현재의 과표구간을 유지할 경우 과표 1억원이하기업은 11%(현행 15%), 과표 1억원이상기업은 20%(현행 27%)의 세율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논의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세제지원방안으로는 활용율이 높은 조세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용하는 것이다.

현재 6개월 기간내에서 운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운용기간을 2년이상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계획이 적절히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수도권에 대한 세제상의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투자촉진을 위해 세제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내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한해 세액공제가 허용되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생산성향상 등 중소기업의 진정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규·증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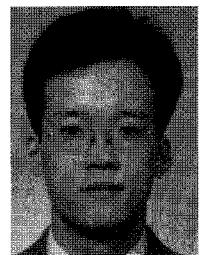
록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수도의 이전과 함께 수도권에 대한 정책이 “집중억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고려, 수도권내 공장에 대한 지방세 증과세 규정도 폐지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각종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저한세의 대폭 인하와 함께 중복지원이 허용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등 소수국가에만 존재하는 “최저한세 제도”와 “중복지원 배제” 등으로 인해 제도가 복잡하고 까다로와 활용율이 저하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헌법상 지위진 국가의 의무다.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제반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금융세제부 / 과장 추민호